

[별표2]

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 전담인력

1. 정보기술부문 인력 현황

가. 정보기술부문 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.

- 1) 임직원 중 내부 규정에 따라 IT 기획·개발·운영 등 정보기술부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
- 2) 정보기술부문을 전담하지 않은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더라도 타 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정보기술부문 업무만을 수행하는 근로자
- 3) 외주인력 중 사업자의 IT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근로자(단, 계약상의 투입공수로 인력 산정)

나.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해당 인력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 인력으로 산출한다.

2. 정보보호 전담인력 현황

가. 정보보호 전담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.

- 1) 임직원 중 내부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에 소속된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(단, 기업의 출입통제, 보안경비 등 물리보안 관련 인력은 제외)
- 2) 정보보호부문을 전담하지 않은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더라도 타 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정보보호부문 업무만을 수행하는 근로자
- 3) 외주인력 중 사업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근로자(단, 계약상의 투입공수로 인력 산정)

나.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해당 인력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 인력으로 산출한다.